

의안 번호	1476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·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일 자 : 2018. 8. 23.(목)
- 나. 발 의 자 : 신성봉 의원 외 6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8. 24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9. 13.(목)

2. 제안설명 요지 (신성봉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자연재해 예방·복구 등 지역자율방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율방재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자연재해 예방·복구 등 지역자율방재 활동 공로자에 대하여 표창 조항 신설(안 제36조)
- 2) 시행규칙조항에 관한 문구 정리 (안 제37조)

다. 근거법규

- 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6조
- 2)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2조, 제5조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자연재해 대책법」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
- 지역자율방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자에 표창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음.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